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16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8.

발 의 자:윤창현·강민국·권은희

김희곤 · 성일종 · 양금희

윤재옥 • 윤한홍 • 조명희

최형두 • 추경호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,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.

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,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,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,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,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 업,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,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다.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 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.
- 라.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하고,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,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,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).
- 마.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,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(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).
- 바.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 조종행위,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

차단 행위, 부정거래행위,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(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).

- 사.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2조 및 제43조).
- 아.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, 이와 관련한 검사·조사 권한, 인가취소·영업정지·시정명령 등 처분권 한 등을 규정함(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).
- 자.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1조).
- 차.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, 불공정거래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 3조부터 제57조까지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30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가상자산"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- 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및 같은 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
 - 다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
 - 라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전자어음

- 마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- 바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2. "가상자산산업"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
 - 나. 가상자산을 매도 · 매수하는 행위
 - 다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 - 라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 - 마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 - 바. 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를 중개.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- 3. "가상자산사업"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가상자산거래"라 한다)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가상자산사업자"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이용자"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타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콜드월렛(cold wallet)"이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의 탈취·세탁·변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의한 임의 입출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

분리하여 저장하는 전자지갑의 방식을 말한다.

- 제3조(국외행위에 대한 적용)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가상자산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산업적 경쟁력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 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정책 연계를 통하여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한다.
- 제6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)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용자의 의무) 이용자는 공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

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- 제8조(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산산업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가상자산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2.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
 - 5.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 - 6. 가상자산산업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제적 공조·규제에 관한 사항
 - 7. 가상자산산업 관련 통계 조사・관리에 관한 사항
 - 8. 가상자산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 - 9. 가상자산의 기술적 · 산업적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
 - 10.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11. 그 밖에 가상자산산업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
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⑥ 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.
- 8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·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

라야 한다.

- 제10조(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) ①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종합적인 가상자산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3. 가상자산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가상자산산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-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방송통신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
 - 2. 가상자산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
 -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·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실태조사) ① 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3조(연차보고서 작성)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가상 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 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

한다.

- 1. 기본계획의 주요내용
- 2.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
- 3.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
- 4.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실적
- 5.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
- 6. 가상자산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
- 7.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관한 대응 및 관리 실적
- 8. 그 밖에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4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, 가상 자산거래 시장의 건전화,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·추진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제15조(금융위원회와의 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효과 및 타당성,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

하여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내용들을 금융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지원)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) 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 다)을 설치한다.
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
 - 2.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
 - 3. 기금운용수익금
 - 4.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
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 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가상자산 관련 청년창업 지원 사업
 - 2.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
 - 3.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
 - 4. 가상자산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
 - 5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
 - 6.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 공조 및 교류 · 협력을 위한 사업

- 7. 가상자산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 사업
-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·관리하되,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18조(전문인력 양성)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및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1. 전문인력의 중·장기 수급 전망
 - 2. 전문인력 양성·공급계획
 - 3.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
 - 4. 전문교육기관 확충

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

- 제19조(가상자산사업의 인가)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
- 가.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
- 나. 외국 가상자산사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사업 수행에필요한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
- 2.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- 3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- 4.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- 5.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적합할 것
- 6. 대주주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
 - 가.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 - 나.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- 8.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(利害相衝)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
-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인가의 신청 및 심사)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 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(제21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)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(欠缺)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,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,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

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1. 인가의 내용
- 2. 인가의 조건(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)
- 3.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(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)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·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·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·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예비인가) ①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(이하 이 조에서 "본인가"라 한다)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9 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 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,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9조제 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기재사항·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인가요건의 유지)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인가요건(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·제7호를 제외하며, 같은 항제2호·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말한다)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미인가 영업행위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24조(가상자산 발행 등록) ①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(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가상자산 발행인
 - 2.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
 - 3.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
 - 4. 이용자 보호에 관한 능력
 -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- 2. 그 밖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④ 등록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·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과 등록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제25조(미등록 가상자산 발행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.

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

- 제26조(신의성실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,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 -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 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7조(내부통제기준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 다)를 정하여야 한다.
 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 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.
 -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- ④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고객의 가상자산 보호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

영위를 위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대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침해사고(이하 "침해사고"라 한다)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·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(cold wal let)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.
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제29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가상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
- 1. 영업에 관한 정보
- 2.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
- 3.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
- 4.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
- 5.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

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「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(이하 "금융정보분석원장"이라 한다)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이해상충의 관리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,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고,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 시로 관리·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설명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 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명의대여 금지) 가상자산사업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

- 제33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(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·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- 2.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 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 - 3.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 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
- 4.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(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)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제34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) ① 제33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35조(시세조종행위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 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
- 2.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(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
- 2.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③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

아니 된다.

- 제36조(시세조종의 배상책임)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5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37조(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,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)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- 제39조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 - 2.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 - 3.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
 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(僞計)의 사용, 폭행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0조(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)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때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39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41조(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)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. 그 밖의 거래(이하 이 조에서

"매매등"이라 한다)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3 3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(轉 得)한 자
 - 나.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이 호에 서 "정보"라 한다)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
 - 다. 해킹, 절취(竊取), 기망(欺罔), 협박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
 - 라.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
- 2.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
 - 가. 그 정보가 가상자산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 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
 - 나. 그 정보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행위가 제35조

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1.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2.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3.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
- 4.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가상자산의 수요·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

제6장 가상자산사업자단체

제42조(가상자산사업자단체 설립 등) ① 공정한 가상자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(이하 "가상자산사업자단체"라 한 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- 1. 설립취지 및 정관
- 2. 해당 단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
- 3.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및 그 전문성
- 4. 재정적 의존 편중 여부
- 5. 가상자산 관련 기술, 보안, 자율규제 등에 관한 전문성
- 6.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이해 및 동종 산업에 대한 경력
-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·대표성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 하여야 한다.
- ④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 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3조(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검사) 금융위원회는 가산자산사업 자단체의 업무와 재산상황, 자율규제 기능의 전문성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44조(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한 처분)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 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인적 구성이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전문성, 자율성, 독립성, 재정 적 자립성 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
 - 2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3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4.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
 - 5. 이 법과 가상자산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 - 6.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
 - 7.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7장 감독 및 처분

- 제45조(감독)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
- 제46조(검사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증인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·절차,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,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제47조(인가취소 및 영업정지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
 - 2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경우
 - 3.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4.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 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5.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 - 6.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7. 제3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

우

- 8. 제35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9.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10. 제39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11.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1. 제48조제1항제1호 ·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제48조(시정명령 등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위반행위의 시정명령
 - 2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
- 3. 경고
- 4. 주의
- 5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1. 해임 또는 면직
- 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직
- 3. 문책경고
- 4. 감봉
- 5. 견책
- 6. 주의
- 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제49조(보고 및 조사)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제출을 명하거나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

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
- 2.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
- 3. 조사에 필요한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제출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3조, 제35조, 제37조,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1.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영치
- 2.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·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의 조사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⑤ 금융위원회는 보고·조사의 방법·절차,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,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- 제50조(청문)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의 취소

- 2. 제4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
- 3.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 는 면직요구
- 제51조(과징금) ① 금융위원회는 제33조, 제35조, 제37조 및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(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.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 -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
 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 - 4. 영업정지기간(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

- 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- 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2조(준용 규정)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,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,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, 과오납금의 환급, 환급 가산금,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」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, 제434조의2, 제434조의3, 제4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장 벌칙

- 제5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 - 1. 제3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 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 - 2.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

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 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

- 3.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 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4.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 위를 한 자
- 5.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- 6.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의사용,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
-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.
- 1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

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.

- 제5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인가 를 받은 자
 - 2.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한 자
 - 3. 제32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한 자
 - 2. 제25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 산을 발행한 자
 - 3.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47조제2항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영업을 영위한 자

- 제55조(징역과 벌금의 병과)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.
 - ② 제5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- 제56조(몰수·추징) 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,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 - ②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, 몰수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- 제57조(양벌규정) 법인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및 제5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

- 3.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
- 4.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가상자산을 저장한 자
- 5.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
- 6. 제29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7. 제43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- 2. 제46조제2항(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이나 증인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 구에 불응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제1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(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가상자산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